

『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.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건축법 및 주차장 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건축법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함.(제2장)
 - 건축법 제33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36조(건축선의 지정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37조제2항(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47조(건폐율)⇒ 80%이하(내화구조는 90%이하)완화적용 함
 - 건축법 제48조(용적률)⇒ 500%이하 완화적용 함
 - 건축법 제51조(건축물의 높이제한)⇒ 완화적용 함

-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(국민주택채권의 매입)⇒ 완화적용 함(제3장)
- 주차장법 제19조(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⇒ 완화적용 함(제4장)
- 사업지구내 무상 양여된 국.공유지의 관리처분 규정을 둠(제6장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- :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 -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
 - : 건축법 및 시행령
 - :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(준칙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,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,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 표준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기준(2000. 8. 7)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.주택건설촉진법.주차장법.국토의계획이용에 관한법률 적용의 특례,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 등 17개조와 부칙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